

2021년도 문화콘텐츠 더블업 동반성장 지원사업 공고

-기술교류 지원을 통한 문화콘텐츠 고도화 지원(A유형) -

(재)제주영상·문화산업진흥원에서는 도내 문화콘텐츠 분야 제작경쟁력 강화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「2021년도 문화콘텐츠 더블업 동반성장 지원사업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바랍니다.

1. 사업목적

- 기술교류를 통한 제작 역량강화 지원을 통해 도내 문화산업 기업의 제작경쟁력 강화 및 양질의 비즈니스모델 확보
- 공공 문화데이터를 활용한 민간-공공 협력형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을 지원하여, 디지털 뉴딜에 맞춤형 사업분야 개척
- 기업 역량 강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도내 문화콘텐츠 분야 新성장동력 확보

2. 사업개요

- 사업기간 : 협약일로부터 ~ 2021. 10. 31.
- 지원대상
 - 공고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 본사 소재지를 두고 콘텐츠 관련 창작, 기획, 개발, 유통을 하는 제주도내 문화콘텐츠 기업(영리법인 또는 개인사업자)
 - ※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2조 1호에 따른 “문화산업”을 영위하거나 동법 제2조에 따른 “문화상품”을 제작하는 제주도내 기업을 대상으로 지원
- 지원유형
 - A유형 : “기술교류 지원을 통한 문화콘텐츠 고도화 지원”

분야	내용	지원규모
유형A (기술교류 지원을 통한 문화콘텐츠 고도화)	• (지원주제) 기존에 사업화된 우수 문화콘텐츠 중, 신규 시장 발굴 및 비즈니스 모델 강화를 위해 고도화가 필요한 문화 콘텐츠 고도화를 위한 타 지역과 기술교류 및 제작비용 지원 • (지원내용) - 문화콘텐츠(상품)의 고도화 비용 - 문화콘텐츠 고도화를 위한 타 지역과 기술교류 비용 - 맞춤형 전문가 멘토링(기술, 사업화 컨설팅) 지원 ※ 콘텐츠 고도화에 필요한 기술매입, 실시권허여, 전문가 자문 3가지 형태를 지원하며, 전체 지원금의 20% 이상을 기술교류 비용으로 편성해야 함	과제당 30,000천원 X 8건

	• (최종사업량) 기술교류 1건 이상, 고도화 콘텐츠(상품) 개발 1식, 신규채용(직/간접) 1명(정규직) ※ 공고일 이후 채용 건은 신규채용으로 소급하여 인정함 ※ 문화콘텐츠 테크업 브릿지사업 연계가능(본 사업 공고일 이후 채용건) ※ 신규 채용인력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고용유지 필수	
--	---	--

○ 용어정의

• 문화콘텐츠 : 영화, 비디오, 음악, 게임, 출판, 방송영상물, 문화재, 캐릭터, 애니메이션, 공연, 미술, 공예, 멀티미디어콘텐츠(앱, 어플리케이션 등), 문화기획, 디자인 등, '문화산업진흥기본법'에 의거한 문화산업에 해당하는 분야의 콘텐츠 • 콘텐츠 고도화: 신규시장 개척, 비즈니스 모델 강화 등의 특정 목적을 위해, 기존 개발한 문화 콘텐츠에 개발 요소를 더하거나, 새롭게 구성하여 콘텐츠의 질을 높이는 일 • 공동문화데이터: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기관 및 공공기관이 보유 중인 '문화예술, 문화유산, 문화산업, 도서, 관광' 등 문화 분야 공공 데이터 • 직접고용 : 본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기업에서 신규로 고용한 건을 의미하며, 공고일 이후 신규채용 건이 있을 경우, 해당 건을 소급하여 인정함 • 간접고용: 사업 기간 내에 고용노동부 지원사업 외 타 부처 지원사업을 통해 발생한 고용 건을 의미하며, 해당 경우 신규 채용으로 소급하여 인정함 ※ 직접/간접 고용 모두 4대 보험 가입 건만 인정
--

○ 지원조건

- 선정된 기업은 사업 기간 내에 약정된 신규고용(정규직)을 해야 하며, 2021년 12월 31일까지 고용 유지필수
- ※ 직/간접 고용 모두 4대 보험이 가입된 건만 인정함

3. 신청접수

- 공모기간 : 2021. 3. 22. ~ 2021. 4. 09.(3주간)
- 접수기간 : 2021. 4. 08. ~ 2021. 4. 09.(2일간) 17:00까지
- 접수방법 : 방문 접수
 - 제주영상·문화산업진흥원 홈페이지(<http://www.ofjeju.kr>)에서 구비서류와 관련 서식을 다운받아 지정된 양식 및 요령에 따라 작성(※ 붙임자료 참조)
 - ※ 제출 시 작성파일 함께 제출 요망(USB 또는 이메일)
 - ※ 제출마감 기간 전까지 제출서류 보완은 가능하나, 마감시한 이후 신청접수 관련 자료 일체 접수 불가
- 접수처 :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신산로82 제주영상·문화산업진흥원 문화산업팀
김영현 책임연구원

☎ Tel : 064) 735-0628 / ✉ E-mail : culture@ofjeju.kr

○ 제출서류

No	제출서류	제출부수	비고
1	과제계획서	1부	○ 유형A의 경우 [첨부1-1] 다운로드 후 작성 ○ 유형B의 경우 [첨부1-2] 다운로드 후 작성
2	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	1부	○ 법인의 경우: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제출 ○ 개인사업자의 경우: 사업자등록증 1부 제출
3	국세, 지방세 완납 증명서	원본 각 1부	○ 국세, 지방세 완납 증명서 원본 제출
4	최근 2년간 재무제표	각 1부	○ 최근 2년간 재무제표(2019~2020년도) ※ 개인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1부 및 종합소득세신고서 1부로 제출
5	서약서	1부	○ [첨부2] 다운로드
6	개인정보이용동의서	1부	○ [첨부3] 다운로드
7	자가진단서	1부	○ [첨부4] 다운로드
8	평가위원 추천표	1부	○ [첨부5] 다운로드
9	채용확약서	1부	○ [첨부6] 다운로드
10	기타 추가 자료	각 1부	○ 주요 실적 관련 증빙(판매, 방송편성, 납품서 등) ○ 신청사 및 참여인력 실적, 참고 이미지 자료 등 ○ 자유양식

4. 평가

- 선정평가 : 외부전문가 15인으로 평가위원 후보자 풀을 구성하고, 사업신청자(기업)이 무작위로 지정한 3회의 번호 중 다빈도 순으로 평가위원 선정
- 평가방법 : 기업 당 20분 이내 대면(발표)평가 진행
 - ※ 코로나19로 인해 평가방법은 변경이 가능
- 선정기준
 - 평가위원 평가점수 60점 이상인 기업 중 고득점 순으로 선정
 - 평가점수는 평가위원 최고 및 최저점수를 포함한 종합 산술평균점수로 산정함
 - 우대가점은 평균점수 60점 이상인 과제에 한하여 적용
- 평가항목 및 배점(A유형)

평가항목	평가요소	배점
기획의 우수성	○ 기존 콘텐츠의 콘셉, 스토리 등 기획의 우수성	40
	○ 고도화 방향 및 방법의 구체성	
	○ 고도화로 확보할 신규시장 및 비즈니스 모델의 적절성	
사업수행 역량	○ 수행기업의 제작경험과 역량의 우수성	30
	○ 참여인력의 전문성과 신규인력 투입의 적절성	
	○ 고도화 작업을 위한 기술교류 활용 방안	
예산 적정성	○ 예산항목의 적절성	30
	○ 예산 집행계획 수립의 적절성	
합 계		100

○ 평가항목 및 배점(B유형)

평가항목	평가요소	배점
비즈니스 모델의 우수성	○ 활용하고자 하는 공동데이터와 비즈니스 모델의 활용방안	40
	○ 비즈니스 모델 개발 방향 및 방법의 구체성	
	○ 타겟팅한 시장의 유효성 및 적절성	
사업수행 역량	○ 수행기업의 개발 역량의 우수성	30
	○ 참여인력의 전문성과 신규인력 투입의 적절성	
	○ 비즈니스 모델 개발과 수행기업간의 연결성	
예산 적정성	○ 예산항목의 적절성	30
	○ 예산 집행계획 수립의 적절성	
합 계		100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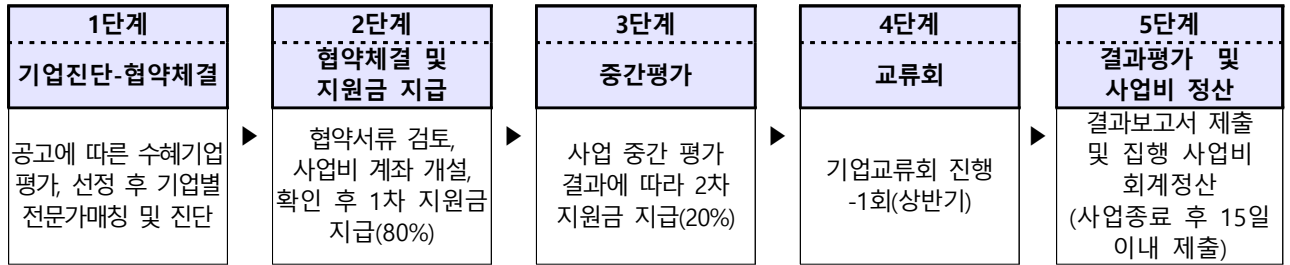
○ 우대가점

우대사항	가점
○ 추가 신규인력 채용 계획이 있는 경우(확약서 제출) - 의무채용 수(A유형 1명, B유형 1명)를 초과하는 직접채용 건만 인정함	초과채용 1명(2점)
	초과채용 2명(3점)
	초과채용 3명 이상(5점)
○ 주관(수행)기업이 (예비)사회적기업인 경우 - 증빙서류 제출 필수	1점
○ 주관(수행)기업이 여성기업인 경우 - 증빙서류 제출 필수	1점

※ 모든 가점사항은 증빙서류를 필히 제출해야 함

○ 결과발표 : (재)제주영상·문화산업진흥원 홈페이지 공시 후 선정기업 개별 통보

○ 과제수행절차



※ 지원금 지급비율과 방식은 내부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

5. 기타사항

- 본 과제 신청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신청기업의 부담으로 함
-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, 신청기업이 선정기업 수에 미달될 경우, 공고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
- 선정평가 기준 미달 시 과제를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
- 본 사업은 국가재정법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, 문화산업진흥기본법,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, (재)제주영상·문화산업진흥원에서 정하는 관련 규정 및 규칙 등에 의거하여 수행되며 선정된 수행기업(자)은 이를 숙지하고 준수해야 함
- 신청, 사업수행에 있어 관련 법령 및 규정의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기업(자), 수혜기업(자)의 책임으로 봄
- 본 사업을 위해 제출된 서류의 내용에 허위사항이 확인될 경우 선정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
- 수행기관에 제재사유 발생 시 지원금 환수, 참여제한 등의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, 제재조치 내용(수행기관명, 사유, 제재내용 등)을 (재)제주영상·문화산업진흥원 홈페이지 등에 게재할 수 있음
- 상기 공고내용은 사정에 의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, 사업요강 및 접수요령 미숙지에 따른 책임은 일체 접수자에게 있음
- 자세한 내용은 [붙임1. 2021 문화콘텐츠 더블업 동반성장 지원사업 사업안내서] 참조

6. 참여제한

- 사전검토 결과, 다음 각 목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함
 - 사업기간 내 제작 완료가 불가능한 과제인 경우
 - 신청일 현재 국가나 공공단체로부터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으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
 - 신청일 기준 국세·지방세 체납 사실이 있거나 제주영상·문화산업진흥원 지원 사업에 선정된 후 이행이 되지 않아 취소된 지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업체(개인)는 참여불가

- 법인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 불이행으로 제재 중이거나 제재 종료 후 1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
 - 법정관리·화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(개인회생, 파산절차 진행 중인 자, 면책권자 포함)
 - 신청일 기준 중앙정부나 지자체 지원 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참여불가
 - 신청자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 기간 동안의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음
- ※ 위 사항에 해당되는 사실이 밝혀질 경우 접수 및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

(재)제주영상·문화산업진흥원 원장